도시관리계획(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-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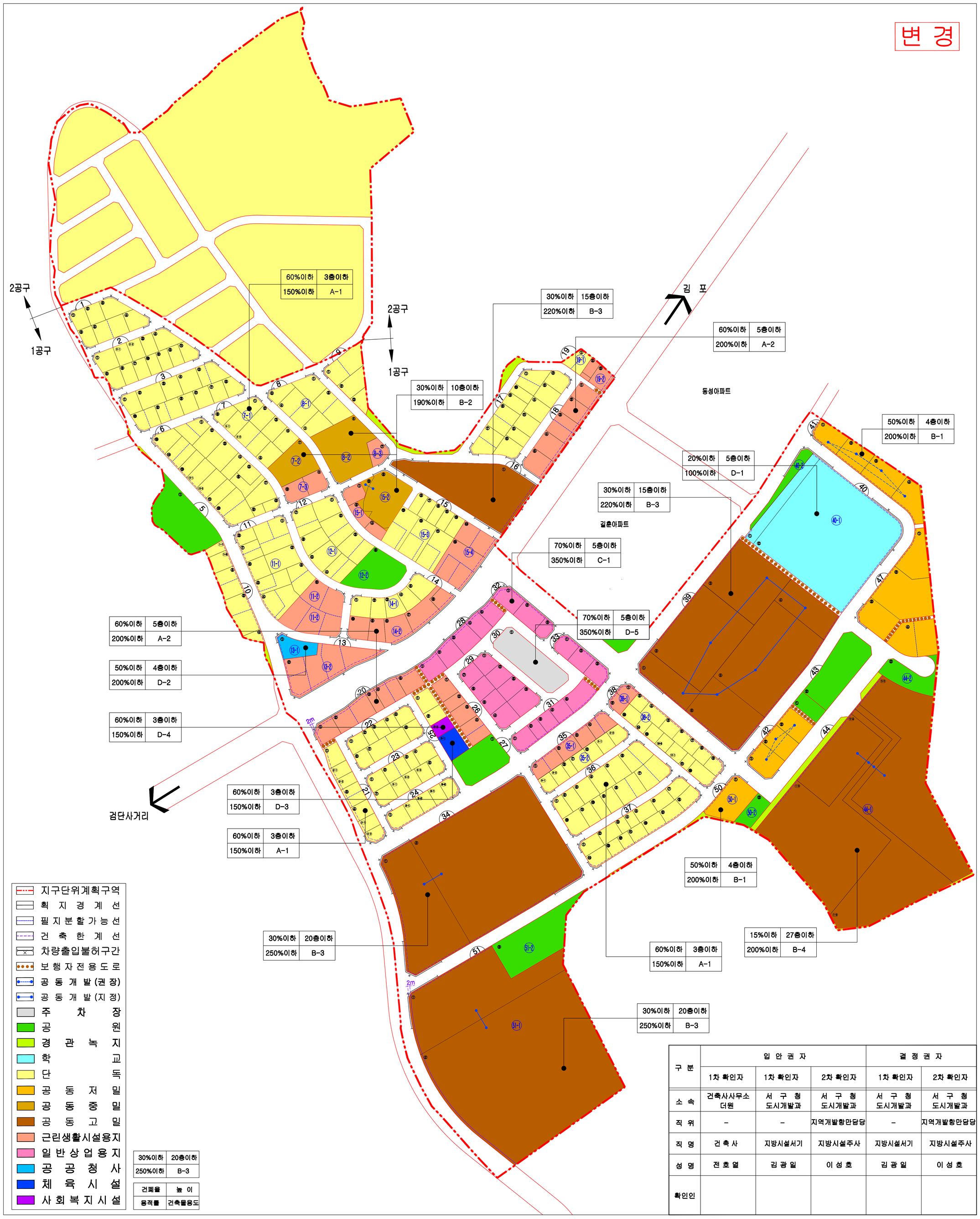

구 분	입 안 권 자			결 정 권 자	
	1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 속	건축사사무소 더원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
직 위	-	-	지역개발항만담당	-	지역개발항만담당
직 명	건 축 사	지방시설서기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서기	지방시설주사
성 명	전 호 열	김 광 일	이 성 호	김 광 일	이 성 호
확인인					

축척 1 : 2,000

50 0 50 100 150 200 250

구 분	A-1	A-2	B-1	B-2	B-3	B-4	C-1	D-1	D-2	D-3	D-4	D-5
허용 용도	• 단독주택	• 단독주택 • 1·2종근린생활시설 •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,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·노인복지시설	•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(주택법)	• 중층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(주택법)	• 고층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(주택법)	• 고층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(주택법)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•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	• 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, 파출소, 우체국, 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과 그 부속용도	• 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	•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- 1층지정용도 : 관리소 - 2층지정용도 : 노인여가복지시설	•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 ※ 별표1의 D-5
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• 지하층 주거용도	• 제1,2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, 정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,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욕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(정화구역에 한함) • 지하층 주거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• 주거복합건축물(공동주택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%이하) •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철도역사, 공항시설, 항만시설 •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단, 주유소,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) •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•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, 감화원, 군사시설 • 발전시설 중 발전소 •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, 장례식장(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) • 1층전면 임면처리 불량업종(건축자재, 세탁소,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, 제조업소, 수리점, 의약품 도매업, 자동차 영업소 등) • 숙박시설 1층 불허용도: • 정육점, 철물점, 난방, 배관, 페인트, 세탁소, 연탄배급소, 정의사, 목공소, 간판업, 염색, 고물상, 건축자재, 알미늄샷시업 등 ※ 단, 정육점,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(%)	60%	60%	50%	30%	30%	15%	70%	20%	50%	60%	60%	70%
용적률(%)	150%	200%	200%	190% (단, 19~25L은 용적률인센티브 20%이내)	250% (단, 16, 20층L은 220%이하)	200%	350%	100%	200%	150%	150%	350%
높 이(층)	3층이하	5층이하	4층이하	10층이하	20층이하 (단, 16, 20층L은 15층이하)	27층이하	5층이하	5층이하	4층이하	3층이하	3층이하	5층이하

주) B-1, B-2, B-3, B-4의 용도는 주택법을 적용하며, A-1, A-2, C-1, D-1, D-2, D-3, D-4, D-5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,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함

주)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함

주) 1,2종 근린생활시설

주) A-2의 용도 내에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,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·노인복지시설은 층별 제한 없음

-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나, 다, 라, 마 항목
  - 가. 수퍼마켓 일용품(식품, 잡화, 의류, 완구, 서적, 건축자재, 의약품류 등)등의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합계가 1,000㎡ 미만
  - 나.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미만
  - 다. 이용원, 미용원,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(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)
  - 라.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 및 조산소
  - 마.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
-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라, 바, 자, 타 항목
  - 가. 일반음식점, 기원
  - 라.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(바닥면적 합계가 500㎡ 미만)
  - 바.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 중개업소(바닥면적 합계가 500㎡ 미만)
  - 자. 사진관, 표구점, 학원(바닥면적 합계가 500㎡ 미만,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)
  - 타. 노래연습장